

코로나 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

목 차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
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3
3. 신용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4
4. 기술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5
5.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6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6. 고용유지지원금 7
7.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8
8.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10
9.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1
10. 구직급여 13
11.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14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1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5
13. 내일키움 일자리 지원 16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14. 아동특별돌봄지원 17
15. 비대면 학습지원 18
1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9
17.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
18.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21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19. 감염병예방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22

※ 사업별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23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 지원대상 · 요건

○ (일반업종) 코로나로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9.12.31일 이전 창업) '19년 월평균 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 감소 ('20.1.1일 이후 창업) '20.6~7월 월평균 매출 대비 '20.8월 매출 감소

○ (특별피해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시간 단축 등 집합제한**된 소상공인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일~)에 따른 PC방,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0.8.30일~)에 따른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10인 이상) 등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20.8.30일~)에 따른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 지원내용

○ (일반업종) 100만원

○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 지원시기

○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9.23일 오후~)
→ 본인지원 신청(9.24일~) → 지급 개시(9.25일~)

* 행정정보(국세청, 건보 등)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소상공인

○ 확인지급 대상자는 매출 증빙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신청 접수·지급 가능(10월중)

□ 지원절차

① 신속지급 대상자

- (지원대상)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여부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안내
 - * 연락처 누락 등으로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온라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지원여부 조회 가능
- (신청)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신청
- (수령)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사후확인) 사후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매출증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자금 반납
 - *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문자 메시지 안내될 예정이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추후 매출증감 여부 확인 예정)

② 확인지급 대상자

- (지원대상) 신속지급 단계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어려운 소상공인
- (신청) 매출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추후 개설)
- (수령)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확인지급 관련 세부 내용은 10월 중 다시 안내

 새희망자금.kr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20만명) 지급

□ 지원대상·요건

- 코로나 재확산으로 8.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폐업신고 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단계 격상 시행일(8.16일)

- ▶ 지원 조건 : 소정의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유희·도박, 보험업, 약국, 성인용게임장, 복권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지원내용

-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신청·접수(9.24일) → 교육이수 확인시 지급(9.28일~)

□ 지원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폐업재도전장려금.kr, 재도전장려금.kr)
-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확인·검증 → 보조금 지급
- (필요서류)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부가
가치과세증명원(매출 확인)+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근로자 수 확인)}

👉 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재도전장려금.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전용 콜센터 1899-1082

3

신용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

□ 지원대상·요건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매출액 감소, 휴업 등)를 입은 중소기업

*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한 기업 등 일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기간	▪ 1년(필요시 만기연장 가능)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0.3%p 차감하되, 최대 1.0% 적용
지원총량	▪ 1.5조원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보증 접수 및 지원

□ 지원절차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신청 후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
심사 절차(통상 1~2주 소요)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 결정

* (첨부서류) 결산서, 재무재표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4

기술보증기금출연 (코로나19 특례보증)

◆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 지원대상·요건

- ①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②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③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 1년 (필요시 만기연장 가능)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1.0% 고정보증료율
지원총량	▪ 0.9조원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신청접수 및 보증지원

□ 지원절차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온+오프라인)에 신청 후 서류접수, 현장조사, 보증심사 절차(통상 1~2주 소요)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 결정

* (첨부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5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재)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확대

□ 지원대상·요건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대출기간(년)	대출한도	금리	지원규모
일반업종	운전 : 5(2)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2.15%	2,000억원
집합금지업종			1.5%	1,000억원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

□ 지원시기

- 국회 확정 즉시 신청접수 및 용자지원

□ 지원절차

-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중진공 앰블런스맨(7영업일 이내 지원결정)을 통해 신속지원 예정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6

고용유지지원금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하는 경우

*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연 **240일**(‘20년 한시) 이내 지원

* 일반업종은 9월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 1일 한도 **7.0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16.7.1.~’20.12.31.),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사·국제회의(‘20.4.27.~’21.3.31.)
- ▶ 우선지원대상기업 : ①제조업 500인 이하, ②보건업·건설업 등 300인 이하, ③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200인 이하, ④기타업종 100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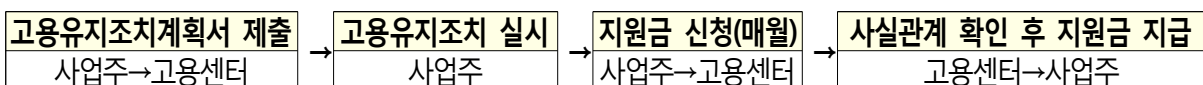
□ 지원시기

-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상시)

*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서 제출 필수

- (지급) 휴업·휴직 실시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 지원절차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문의: 국번없이 1350)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검색)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비용 지원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소득요건) ①'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②'20.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8월 또는 9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우선순위) ①연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소득 감소규모 큰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이미 받은 특고 등(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 (9월10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지원시기 및 절차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 (9월29일)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자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를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추경 통과 후 약 2주간 심사인력 선발·교육, 지원금 신청·심사시스템 보완 등 준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

8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소속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자

※ 매출감소·근속기간 요건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추후 확정 예정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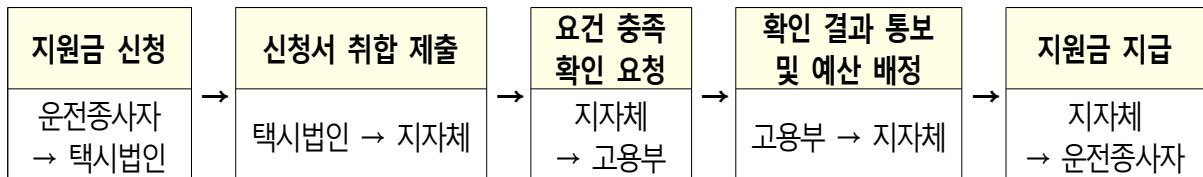
-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 지급

□ 지급절차

- (접수) 사업공고 후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소속 법인에 신청 (10월초) → 택시법인이 광역자치단체에 취합·제출(10월중)
- (지급) 요건 확인 및 자치단체별 신청에 따라 예산 배정(10월말) → 광역자치단체별 지급 개시(10월말~)

※ 자세한 사항은 10월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절차



- ◆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구직 지원

□ 지원대상·요건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포함)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
 -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인 경우, 취성패 I 유형 참여중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인 경우,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는 지원 제외

【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지원내용

- 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 지원시기 및 절차

- (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20.9.23.)
 - 1차 신청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자 발송('20.9.23.)
 -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1차) '20.9.24.~ 9.25. (2차) '20.10.12.~10.24.
 - (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 심사 및 지급
 - (1차) '20.9.29. (2차) '20.11월말까지
- ※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각 지역 고용센터

10

구직급여

◆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 지원대상·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하고,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이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20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0,060원(4시간 이하) ~ 60,120원(8시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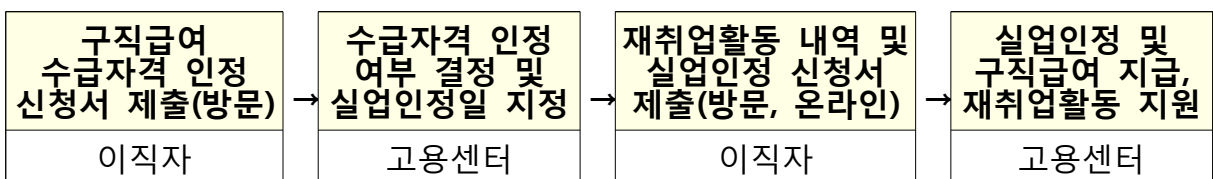
□ 지원시기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후에 8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최초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이후부터는 통상 **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역 및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방문 또는 인터넷)하고 구직급여 수혜

□ 지원절차



11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고통·생계 지원을 위해 공공일 자리를 제공

- (방역) 지역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준수 단속 보조요원 등
- (재해 복구)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해복구 지원
-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및 주민 생계 지원 목적의 일자리

□ 지원대상·요건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우선선발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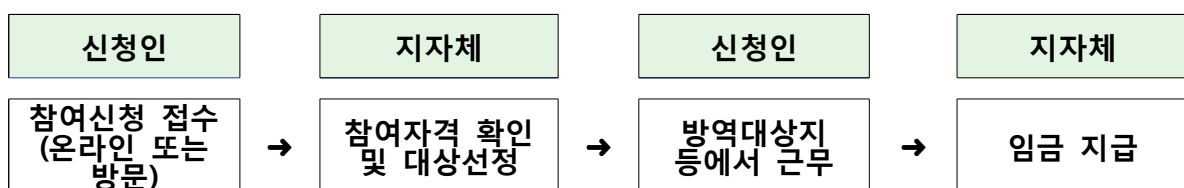
- 시급 8,590원(최저임금), 월 67~180만원(주 15~40시간)
 - ※ 4대 보험료 별도

□ 지원시기

- 지자체별 모집공고(9~10월)
 - 각 지자체가 지원 분야, 근무시간, 근무지 및 근무조건, 급여 지급일 등 지자체별로 세부내역을 설계하여 공고

□ 지원절차

-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등) 및 지참서류(신분증 등)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 가능)



1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 사각지대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요건)
 - (위기사유)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 지급제외 대상 :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원)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지원내용

- 1인 40만원, 4인 100만원 1회 지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시기

- 온라인 및 현장 접수(10월 중순) → 요건 심사 후 지급(11~12월)

□ 지원절차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조사(시군구) → 결정(시군구) → 이의신청(시군구) → 지급(시군구)
 - 사후관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중

※ 신청 증빙서류 : 신청서, 소득감소확인서류,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등

13 내일키움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유지를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 요건

○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 자활사업 및 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의 중복 참여 불가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소득 기준	2,109,000		2,244,000		2,903,000		3,562,000	
건강보험료*	29,273	70,702	36,389	75,066	81,372	97,177	107,954	120,068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최저보험료 부과선)까지 허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건보료 기준 외 타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 예정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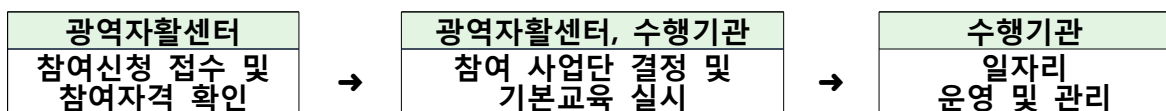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근로경험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여 지급(2개월, 주 40시간 기준 월 180만원)

□ 지원시기

○ 참여신청 접수(10월 중순~), 소득기준 등 충족하는 참여자 대상 일자리 운영(11월~12월)

□ 지원절차

○ 전국 15개 광역자활센터 및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신청·접수
-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10월 이후 민간 수행기관의 일자리 채용 공고 및 지역별 광역자활센터의 안내 참조



* 광역자활센터가 없는 세종은 충남광역자활센터, 제주는 관내 지역자활센터 중 거점센터 지정하여 수행(향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별도 공고 예정)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 제공

□ 지원대상·요건

- 초등학교 이하 아동('20.9월 기준, '08.1.~'20.9. 출생아)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20만원**, 계좌(현금) 지급

□ 지원시기

- 미취학 아동(252만명) 및 초등학교(270만명) **9월 내 지급**(9.28~29일)
* 학교 밖 아동은 안내, 신청·접수, 지급처리기간 등 감안, **10월 내** 지급 예정

□ 지원절차

- (지자체)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교 제외)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20.9월 기준)로 일괄 지급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08.1.~'13.12. 출생아)
 - (초등학교)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 통해 지급
* 스쿨뱅킹 미등록 또는 별도 계좌 지급을 원하는 부모는 사전 안내하여 등록 진행
 - (학교 밖 아동) 아동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일정기간 신청 받아 지급
* 신청 공고시 구체적 증빙서류 안내 예정
(예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코로나19로 인한 중학교 휴교 및 원격교육에 따른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비대면 학습지원 제공

□ 지원대상·요건

- 중학생 아동(중1~3, '05.1.~'07.12. 출생아)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5만원**, 계좌(현금) 지급

□ 지원시기

- 중학생(132만명)·학교 밖 아동(6만명)은 사전 안내·절차 등을 감안, 추석이후 빠른 시일내 지급 추진

□ 지원절차

- (교육청) 중학교 학령기 아동(중1~3, '05.1.~'07.12. 출생아)
 - (중학생)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 통해 지급(10월 내)
 - * 스쿨뱅킹 미등록 또는 별도 계좌 지급을 원하는 부모는 사전 안내하여 등록 진행
 - (학교 밖 아동) 아동 주소지 지역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일정기간 신청 받아 지급
 - * 신청 공고시 구체적 증빙서류 안내 예정
(예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16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휴교·휴원 등 조치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만 8세 이하(육아휴직 연령 기준)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등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유급 휴가 최대 3일 있음)

□ 지원내용

※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한부모 25일) 사용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30일,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맞벌이 부부 합산 20일, 100만원)

□ 지급절차

-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추가지원분(5일, 한부모 10일)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9월 28일 이후 신청 가능(전산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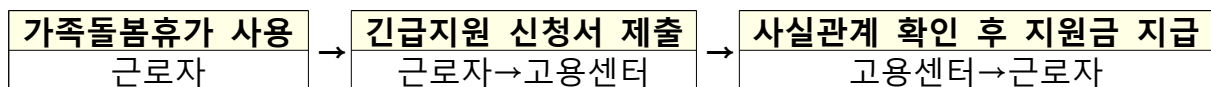
* 단, 기존 10일분에 대해서는 상시 지원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공공기관 근로자) 기존 10일분에 대해 상시 지원신청 가능

※ 위 내용은 돌봄비용 신청 가능시기로, 돌봄휴가 사용 가능시기와 별개

- (지급) 휴가 사용 후 신청서 제출 →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

□ 지원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신청(문의: 국번없이 1350)

※ (첨부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돌봄휴가 사유 증명자료(휴원·휴교 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 등)

17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②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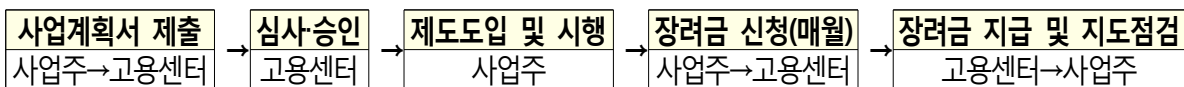
- 활용 근로자 1인당 주 3회 활용 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年 최대 520만원)

*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지원시기

- (접수) 사업계획서 연중 상시 접수
- (지급) 접수 후 1월 이내 사업계획서 승인 → 제도도입 및 시행 후 장려금 신청 →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

□ 지원절차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문의(국번없이 1350)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제도활용 전·후 근로 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실근로시간 확인서류 등

◆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 증가를 뒷받침하도록 고등학생, 청년, 어르신 등 약 **2,039만명**의 이동통신요금 **2만원** 할인 추진

- 고등학생 :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학습수요 증가에 대응한 통신비 지원
- 청년 : 대학생 원격수업, 청년 구직활동, 사회초년생 등 지원
- 노년층 :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요건

- (연령) 고등학생(만16~18세), 청년(만19~34세), 어르신(만65세~)

* 고등학생·청년 : 1985.1.1. 이후 출생자 ~ 2004.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 1955.12.31. 이전 출생자

- (기준) 본인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이용중인 자

* 청소년, 어르신 등이 부양자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비용없이 명의변경 가능

□ 지원내용 및 시기

-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한해 **2만원 정액지원**(1개월 원칙)
- 원칙적으로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 예정(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

*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에 미달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하여 다음달로 이월 등을 통해 최대 2만원 정액감면 추진

□ 지원절차

-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 기존 가입자 : 별도 신청 불요
→ 9월분 요금청구내역에서 자동 감면

□ 지원안내

- 통신사 콜센터(☎11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 및 전용 콜센터(☎1344)
-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통해 안내 예정(9. 23~)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 지원대상·요건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 (지원요건) 만19세~61세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 지원내용

- 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상예방접종 지원*

* 보건소의 경우 백신비,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비와 시행비

□ 지원시기

-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10月~)

□ 지원절차

- 안내를 받은 후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를 통한 사전예약 → 예약한 병원 내원하여 예진 후 접종
- 예방접종 시기 및 사전예약 등 안내는 **1339 콜센터**로 문의 가능

사업별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 및 문의전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홈페이지	문의전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kr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재도전장려금.kr 또는 재도전장려금.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전용 콜센터 1899-1082
신용보증기금출연	www.kodit.c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기술보증기금출연	www.kibo.or.kr	
긴급경영안정자금	www.kosmes.or.kr	
고용유지지원금	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www.youthcenter.go.kr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www.ei.go.kr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www.통신비지원.kr	통신사 콜센터 114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 전용 콜센터 1344
감염병예방관리(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nip.cdc.go.kr	콜센터 1339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관계부처 합동